

시설운전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별지 7호 서식)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운영에 따른 입력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시]

1) 해당 일자에 방지시설 처음 가동 전에 검침할 경우

1120-1110=10(실제 사용한 전력사용량)을 사용한 일자는 1월 1일이므로 1120은 1월 1일에 입력해야 합니다.

<검침량 확인>

일자	전력 검침량
1월 1일	1110
1월 2일	1120
1월 3일	1130
1월 4일	미가동
1월 5일	1140
1월 6일	1150
...	...



<SEMS에 입력>

일자	전력 검침량
1월 1일	1120
1월 2일	1130
1월 3일	1140
1월 4일	1140
1월 5일	1150
1월 6일	...
...	...

2) 해당 일자에 방지시설 가동 완료 후 검침할 경우

1120-1110=10(실제 사용한 전력사용량)을 사용한 일자는 1월 2일이므로 1120은 1월 2일에 입력해야 합니다.

<검침량 확인>

일자	전력 검침량
1월 1일	1110
1월 2일	1120
1월 3일	1130
1월 4일	미가동
1월 5일	1140
1월 6일	1150
...	...



<SEMS에 입력>

일자	전력 검침량
1월 1일	1110
1월 2일	1120
1월 3일	1130
1월 4일	1130
1월 5일	1140
1월 6일	1150
...	...

3) 방지시설이 24시간 가동할 경우 또는 일자의 구분이 모호하게 가동 될 경우 오늘 검침량에서 전날 검침량을 뺀 실제 전력사용량이 어떤 일자에 해당되는지 사업장에서 판단하여 해당일자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